

## 2015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 [SW기술자 평균임금]

(단위: 명, 원)

구분	2015년 조사인원	평균임금(일평균)		평균임금 (월평균)	평균임금 (시간평균)
		2014년	2015년		
기술사	379	408,995	411,642	8,644,482	51,455
특급기술자	17,276	376,262	373,593	7,845,453	46,699
고급기술자	9,361	272,075	276,160	5,799,360	34,520
중급기술자	10,267	221,371	221,375	4,648,875	27,672
초급기술자	15,385	189,174	190,787	4,006,527	23,848
고급기능사	172	172,384	177,337	3,724,077	22,167
중급기능사	320	140,531	141,168	2,964,528	17,646
초급기능사	229	116,756	118,732	2,493,372	14,842
자료입력원	146	111,487	112,570	2,363,970	14,071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산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1.0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계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법정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평균임금의 기본급은 2015년 88,797원으로 조사됨.

\* 2015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0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4년 대비 2.4% 증가함.

[시행일]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

2015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 참고 :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 기술사	
특급 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

단, 2009년 7월 31일 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
특급 기술사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사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사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사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⑤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제산기조작용용, 정보보안
-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라. 기능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